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09

발의연월일: 2015. 4. 6.

발 의 자:은수미·김경협·김광진

김기식・김기준・김상희

김성주 · 김현미 · 박남춘

박홍근 · 배재정 · 신기남

오영식 • 우원식 • 이개호

이목희 • 이미경 • 이상직

이인영 • 이춘석 • 이학영

이해찬 · 인재근 · 장하나

전순옥 • 전해철 • 정청래

진선미 • 진성준 • 최동익

최민희 · 최원식 · 한정애

홍종학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경영권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상호 분리하여 경영권에 대한 사항에 대한 노동쟁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경영권의 변화는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외의 경영권 행사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을 정리해고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까지 넓히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를 전보받을 목적으로 제기된다기보다는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요건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외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완화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실제 입은 손해의 전보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배상청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는 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영국사례처럼 조합규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합리적 수준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호, 제3조, 제3조의2 신설, 제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전단 중 "解雇 기타"를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 기타"로,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을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를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조제4호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 2.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임원, 조합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

- 위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노동조합의 임원, 조합원 또는 그 밖의 근 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④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민법」 제76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1.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 상황 등 피해 확대의 원인
 -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 5.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제3 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한도)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배상책임을 지는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한도에서 정한다.

조합원 수	금액
300인 미만	2,000만원 이하
300인~1,000인 미만	1억원 이하
1,000~10,000인 미만	2억 5천만원 이하
10,000인 이상	5억원 이하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第2條(定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	5
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	
(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	
祉·解雇 기타 待遇등 <u>勤勞條</u>	<u>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u>
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	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 기
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	<u>타</u> <u>근로조건 및 노동</u>
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	관한
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u><후단 삭제></u>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u>말한다.</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	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①
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u>단체교섭, 쟁의행위, 그</u>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	
求할 수 없다. <단서 신설>	<u>다만, 노동조</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조제4호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 2.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의 임원, 조합원 또는 그 밖의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를 기획하거나 주 도한 노동조합의 임원, 조합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노동조 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 이 없다.
- ④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제1 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

<신 설>

<신 설>

지 아니한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 의무자는 「민법」 제765조에 도 불구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 감할 수 있다.
- 1.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 상황 등 피해 확대의 원인
-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 5.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 도(제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제한) 제3 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 상액은 배상책임을 지는 노동

조합의 규모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한도에서 정한다.

조합원 수	금액
0000) मो मो	2,000만원
300인 미만	이하
300인~1,000인	1억원 이하
미만	1탁천 역약
1,000~10,000	2억 5천만원
인 미만	이하
10,000인 이상	5억원 이하